

조달청고시

'86 주요공사계약업무 처리기준

1986. 3. 19

'86년도에 집행할 주요공사의 제한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별첨과 같이 확정하였으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준에 해당되는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코자 할 때에는 본 기준에 의거 계약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86년 주요공사 계약업무 처리 기준 1부.

1. 목 적

•86년도에 집행할 주요공사에 대한 제한 및 지명기준등을 합리적으로 선정 적용함으로써 공사계약업무의 신속·효율적 집행과 공개행정을 통한 건설업계의 발전을 유도하는데 있음.

2. 기준설정 및 활용방침

가. 기준설정

•종전에 집행한 주요공사의 제한 및 지명기준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

나. 활용방침

•86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기준에 의하여 주요공사가 집행되도록 활용

3. '86 주요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 땀공사 실적제한 기준

(1) 균제한경쟁 대상공사

-계약대상 땀의 높이가 15m미만이거나 저수용량이 2,000만톤 미만의 땀은 땀시공실적에 관계없이 균제한경쟁으로 집행

* 하천법 제38조 참조

(2) 땀시공실적을 기준으로한 제한경쟁 대상공사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으로서 높이가 15m 이상 30m미만 땀공사는 15m 땀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대땀높이 기준)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으로서 높이가 30m이상 50m미만 땀공사는 30m 땀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고땀높이 기준)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으로서 높이가 50m 이상 땀공사는 50m이상 땀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 항만공사 수의계약적용 예외기준

-동일체 구조물, 동일 현장공사로서 예산회계법령 및 수의계약적용 요령의 규정에 충족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중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일반, 지명, 제한 등)으로 집행

•채석장, 토취장, 적출장, 제작장등이 공사시공 과정상 동시 사용만을 사유로 한 동일 현장공사는 경쟁계약으로 집행 (단, 자연보존지역 또는 도서벽지공사 제외)

•채석장, 토취장, 적출장, 제작장 등이 동시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양항만구조물 총시설계획 기준 최단거리가 600m이상인 동일 현장공사는 경쟁계약으로 집행

◇ 하수처리장 실적제한 기준

-시설규모가 2만톤/일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제한없이 환경보전법령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경쟁

-시설규모가 2만톤/일 이상~3만톤/일 미만일 경우에는 2만톤/일 이상 하수 및 폐수처리장 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시설규모가 3만톤/일 이상~5만톤/일 미만일 경우에는 3만톤/일 이상 하수 및 폐수처리장 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시설규모가 5만톤/일 이상인 경우에는 5만톤/일 하수 및 폐수처리장 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 폐수처리장 실적제한 기준

-시설규모가 5만톤/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적 제한없이 환경보전법령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경쟁

-시설규모가 5만톤/일 이상~10만톤/일 미만인 경우에는 5만톤/일

이상 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시설규모가 10만톤/일 이상~20만톤/일 미만인 경우에는 10만톤/일 이상 시공실적업체로 제한

-시설규모가 20만톤/일 이상인 경우

에는 20만톤/일 이상 시공업체로 제한

*하수 및 폐수처리장 시설규모는 설계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교량공사 실적제한 기준

•균제한경쟁 대상공사

-교량길이 100m 미만 교량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균제한경쟁으로 집행

◇ 시공실적에 따른 제한경쟁

-교량길이 100m 이상 300m미만 교량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길이 100m

이상 교량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교량길이 300m 이상~500m미만 교량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길이 300m

이상 교량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교량길이 500m 이상 1,000m미만 교량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길이 500m

이상 교량시공실적업체로 제한경쟁

-교량길이 1,000m 이상 교량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길이 1,000m 이상 교량공사 실적업체로 제한경쟁

(주 1) 대형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상기 기준으로 적용

추진하되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한 (주 2) 철강재 설치가 수반되는 교량공사의 경우 철강재 면허소지 사항을 제한조건으로 추진 가능

◇ 사무용 대형건축물 실적제한 기준

(1) 기준원칙

-지상 11층 미만이거나 지상연면적 30,000m²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균제한경쟁으로 집행

(2)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한 제한경쟁

-사무용 대형건축물에 해당되는 공사 중 연면적 30,000m²이상으로서 건축물 층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기준으로 집행

•건축물 높이 11층 이상 15층 미만 공사는 사무용 건축물 11층 이상 시공실적업체로 제한

•건축물 높이 15층 이상 20층 미만 공사는 사무용 건축물 15층 이상 시공실적업체로 제한

•건축물 높이 20층 이상 공사는 사무용 건축물 20층 이상 시공실적업체로 제한

◇ 민자사업 관련공사 계약방법 결정기준

(1) 기본원칙

•민자사업과 관련되어 발주하는 정부공사(공공사업공사 포함)는 경쟁계약방법으로 집행

(2) 예 외

•공사의 성질 및 여부등에 비추어 민

자사업공사 시공자의 입찰참여가 불
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
련업체를 포함한 경쟁입찰로 집행

◇ 전기공사 분리 발주의 예외기준

- 차관공사로서 차관조건에 따른 전기
공사
-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인입찰에서의
전기공사
- 특허공법에 의하여 일관된 공정이 요
구되는 전기공사
- 특수구조물과 병행 시공되는 전기공사
- 지하철, 터널 등 협소한 공간내 전기
공사
- 해상구조물 및 매립지등 토목기초공
사시 병행 시공되어야 하는 전기골조
배관공사
- 주요행사에 수반되는 가건물의 전기
공사
- 플랜트설비로서 일괄 시공할 필요성
이 인정되는 전기공사
- 기계공장 또는 발전소(옥외전기설비
제외)에 대한 전기공사
- 기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9조에
명백히 충족된다고 인정되는 전기공
사

4. 시공실적 적용원칙

- 가. 본 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시공
실적 적용 및 분류는 가급적 경쟁성
이 확대되도록 적용, 운영함을 원칙
으로 한다.
- 나. 본 기준에 적용되는 시공실적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외 공사와
민간공사도 포함하여 인정한다.
- 다. 교량공사의 실적적용에 있어서는 육
교(Over Bridge)를 포함하여 인정
한다.
- 라. 사무용 대형건축물의 계약대상공사
및 시공실적은 각각 지상 층수 및 연
면적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옥탑부
분은 제외한다.
- 마. 사무용 대형건축물 시공실적은 건축
물 사용 용도가 사무용으로 건축된
공사를 의미하여 아파트, 백화점, 호
텔 등의 업무용 건축물 시공실적은
제외한다.
- 5. 시행시기
- 본 기준은 1986년 3월 20일부터 접
수되는 계약요청서부터 적용한다.

◎ 체신부령제 776 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

1986. 3.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에 관
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
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
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
합체를 말한다.
2. “교환설비”라 함은 다수의 전기통
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
어·접속하여 회선 상호간의 전기통
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
대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단말
장치등으로 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
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이하 “전
기통신신호”라 한다)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
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
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동선·광섬유등의 전송매체
로 제작된 선조·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
핸드홀·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정보검색 및 처리설비”라 함은 정
보통신업무제공에 사용되는 전자계산
기와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등 그
주변기기를 말한다.
6. “사업자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
기통신업무(이하 “공중통신업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통신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전기통신설
비를 말한다.

7. “이용자통신설비”라 함은 공중통신
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
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단말장
치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등을 말한다.
8.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구내상
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
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통신터널·배관
·배선반·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정
류기·축전지·전원반·예비용 발동
발전기 및 배선등 통신용전원을 공
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0. “국선”이라 함은 공중통신사업자
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 통신설비
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11. “강전류전선”이라 함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싸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싸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선을 말
한다.
12. “전력유도”라 함은 전기공작물 또
는 전철시설 등이 그 주위에 있는 전
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전유도 및 전
자유도 등에 의한 전압이 발생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13. “저주파”라 함은 주파수 300헤르
츠 미만의 전자파를 말한다.
14. “음성주파”라 함은 주파수 300 헤
르츠 이상 3천 400헤르츠 이하의 전
자파를 말한다.
15. “고주파”라 함은 주파수 3천 400
헤르츠를 초과하는 전자파를 말한다.
16. “평형도”라 함은 통신회선의 중성
점과 대지와와의 사이에 기전력을 가한
때에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압과
통신회선의 단자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대수비율을 말한다.
17. “절대대시벨”이라 함은 하나의 전
력을 1밀리와트에 대한 대수비로 표
시한 것을 말하며, 그 단위는 디·
비·엠(dBm)으로 한다.
18. “비트오율”이라 함은 송신된 비트
의 수에 대한 잘못 수신된 비트의 수
의 비율을 말한다.
19. “호손율”이라 함은 발신가능신호
또는 선택신호가 있는 경우 자동교
환설비의 내부에서 회선구성에 실패

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발빠른 선진조국

하는 비율을 말한다.

20. “전신왜율”이라 함은 전신부호의 소자길이 또는 위치가 이론적인 부호 소자의 길이보다 늘어 나거나 짧아지는 율 또는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율을 말한다.

21. “명음”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회로간에 전자적·음향적 결합에 의하여 스스로 발생하는 발진음을 말한다.

제4조 (분계점의 설정) ①전기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분계점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 (누화방지) 전기통신설비는 회선 상호간에 전기통신신호의 내용이 별표 1의 누화감쇠량 한계치를 초과하여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손상등의 방지) ①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호기능 및 접지) ①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혼촉등에 의하여 이상 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설비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지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능장치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등이 사람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되어야 한다.

1.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이 100옴 이하일 것
2.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이 10옴 이하일 것
3. 접지선은 직경 1.6밀리미터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

용하고 접지극은 동판·동관·동봉 또는 나동선을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할 것

제8조 (전원설비) ①전기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전기통신설비가 최대 사용될 때에 소비되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서 정격전압의 허용범위 안으로 공급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자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3시간이상 최대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와 발동발전기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사업자통신설비외의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표준화)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다양한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상호간의 신호방식·접속규격·통신계층 구조등 전기통신기술을 표준화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성능·품질 및 신뢰도유지와 호환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자재 별로 규격을 표준화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제10조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검사)

①전기통신기자재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와 전파관리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한 형식검정에 합격된 전기통신기자재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범위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사업자통신설비
제1절 통 칙

제11조 (안전대책) 공중통신역무에 제공되는 사업자통신설비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기상 변화, 진동, 충격, 화재, 압력 기타 외부환경으로부터 쉽게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안전대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요기기 및 기능의 이중화) 사업자통신설비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기 및 기능은 이중화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신속하게 대체,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고장검출) 사업자통신설비에는 정전 또는 공통제어기기의 동작정지 기타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검출하고, 그 설비의 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통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용자통신설비의 보호기능) 사업자는 자기의 통신설비가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하여 그에 접속된 이용자통신설비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능 및 접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이용방식) ①사업자통신설비중 이용자가 단말장치등의 숫자 또는 기호의 조작으로 이용하는 사업자통신설비는 그 이용방식이 이용자가 알기쉬운 것이어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통신설비의 이용방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 (전화급회선의 전송품질) ①전화급회선의 주파수대역은 300 헤르츠이상 3천400 헤르츠이하로 한다.

②이용자통신설비와 접속하기 위한 전화급회선의 전송손실은 각 회선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800헤르츠 또는 천 헤르츠로 측정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회선의 각 부분별 손실배분은 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는 바에 의한다.

1. 시내교환회선의 경우에는 31데시벨이하일 것
2. 시외교환회선의 경우에는 32데시벨이하일 것
3. 국제교환회선의 경우에는 16데시벨이하일 것

4. 비교환회선의 경우에는 29데시벨 이하일 것

③이용자통신설비와 접속하기 위한 전 화급회선의 비트오율한계치(측정시간 15분을 기준으로한 유지보수상의 기준치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환회선으로서 통신속도가 200비트/초 또는 300비트/초인 경우에는 1×10^{-4} 이하일 것

2. 교환회선으로서 통신속도가 600비트/초, 1천200비트/초, 2천400비트/초 또는 4천800비트/초인 경우에는 1×10^{-3} 이하일 것

3. 비교환회선으로서 통신속도가 200비트/초, 300비트/초, 600비트/초, 1천200비트/초, 2천400비트/초, 4천800비트/초, 7천200비트/초 또는 9천600비트/초인 경우에는 1×10^{-5} 이하일 것

제17조 (전기통신망의 품질) 사업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안에서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망의 세부품질기준을 전기통신망 또는 공중통신역무별로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

제2절 교환설비

제18조 (신호감지 및 응답기능) ① 자동교환설비는 단말장치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전기통신신호를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단말장치등으로부터 발신요구신호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발신가능신호를 보내는 기능

2. 단말장치등으로부터 선택신호가 있는 경우 그 신호에 의하여 회선의 구성이 가능한 때에는 그 신호에 의하여 회선을 구성하고 발신측에는 호출중신호, 수신측에는 호출신호를 보내는 기능

3. 단말장치등으로부터 선택신호가 있는 경우 회선 또는 통신상대방이 통신중으로 회선의 구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신측으로 통신중 신호를 보내는 기능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출신호에 대하여 수신측의 응답신호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회선을 통신가능상태로 유지하는 기능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가능상태에서 발신측 또는 수신측의 단말

장치등으로부터 통신종료신호를 수신한 경우 또는 통신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회선을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기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교환설비의 신호방식 및 규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한다.

제19조 (통신량측정기능등) ① 자동교환설비는 그 통신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자동교환설비는 이용자회선별로 이용한 통신량·회수 또는 요금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설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호손율) 자동교환설비의 호손율은 1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21조 (자동전화교환설비의 기능 및 특성) ①자동전화교환설비의 신호방식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자동전화교환설비의 가입자회선공급전원은 직류 48볼트이상 52볼트이하의 정전위접지전압이어야 한다.

③자동전화교환설비중 시외자동교환기는 4선식우회중계기능을 가져야 한다.

④자동전화교환설비의 전기적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형회로 회선의 특성임피던스는 600옴의 저항성일 것

2. 평가잡음전력은 충격성이상잡음이 없는 정상상태에서 200피코와트 이하일 것

⑤자동전화교환설비의 통신용접지저항치는 회선용량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선용량이 500회선이하인 경우에는 10옴이하일 것

2. 회선용량이 501회선이상 5천회선이하인 경우에는 5옴이하일 것

3. 회선용량이 5천1회선이상 1만회선이하인 경우에는 2옴이하일 것

4. 회선용량이 1만1회선이상인 경우에는 1옴이하일 것

제22조 (자동전신교환설비의 기능 및 특성) ①자동전신교환설비에 사용되는 조보식 5단위인쇄전신부호는 별표3과 같다.

②조보식 5단위인쇄전신부호의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전신교환설비의 통신

속도는 50보오를 기본으로 하고 75보오 및 100보오로도 통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속도의 허용오차는 각 속도별도 ± 0.7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④자동전신교환설비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신왜율은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신왜율측정용 표준신호는 별표3의 전신부호의 번호중 29번·19번·28번·17번·30번·31번 및 15번의 전신부호를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절 전송 및 선로설비

제23조 (회선평형도) ①선로설비의 회선평형도는 주파수 800헤르츠 또는 1천헤르츠에서 측정하여 4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선조를 사용하는 경우

2. 강전류전선을 전송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회선(직류 또는 저주파의 회선에 있어서는 평형2선식에 한한다)에 대하여 주는 방해가 -55절대데시벨이하인 경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4. 선로설비에 음성주파 또는 고주파의 전류를 보내는 것으로서 수신단에 증폭기가 있는 다른 회선에 대하여 주는 방해가 그 증폭기의 입력측에서 다음 각목의 1과 같은 경우 가. 피방해회선전류의 주파수가 음성주파일 경우:-70절대데시벨이하

나. 피방해회선전류의 주파수가 고주파일 경우:-85절대데시벨이하

5. 선로설비에 직류 또는 저주파의 전류를 보내는 것으로서 대지귀로방식의 다른 회선에 대하여 주는 방해가 피방해회선의 수신전류의 5퍼센트 이하인 경우

②2이상의 회선이 피방해회선에 동시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2이상의 회선을 1의회선으로 보고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예비시설등의 확보) 전송 및 선로설비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예비시설 또는 우회전송기

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 측으로 인입되는 전송 및 선로설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전송조건) ① 전송 및 선로설비 (강전류전선을 전송매체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보내는 전기통신신호전압은 100볼트이어야 한다. 다만, 전송 및 선로설비의 시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특수한 전압을 보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송 및 선로설비에 보내는 전송전력의 제한치와 전송 및 선로설비 상호간의 접속을 위한 세부기술기준은 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한다.

제26조 (전송 및 선로설비의 지하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전송 및 선로설비는 지하에 묻어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가공선로설비) ①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른 가공선로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미터이상일 것.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공사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도면으로부터 6.5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7천볼트를 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으로 한다.

② 가공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가공선로설비로부터는 60센티미터이상, 다른 사람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으로부터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거나 가공선로설비의 건설과 보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가공선로설비가 하천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헬리콥터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28조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하는 전송 및 선로설비) 지하 또는 물밑에 설치하는 전송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9조 (가입전화선로의 공급전류) 가입전화선로는 30밀리암페어이상의 직류전류를 가입전화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0조 (강전류전선과의 관계) ① 전송 및 선로설비가 강전류전선과 교차·접근하거나 동일한 지지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강전류전선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보호망 또는 보호선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전류전선과의 거리 및 보호대책의 기준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전력유도방지) ① 전송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 및 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전압이 다음 각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이상인 경우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전압 : 60볼트
3. 기기오동작 유도중전압 : 15볼트
4. 잠습전압 : 1밀리볼트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4 절 정보검색 및 처리설비

제32조 (축적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통신내용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가 보관되는 정보검색 및 처리설비에는 당해 이용자외의 자가 보관된 정보를 쉽게 알아내거나 파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정보처리기능의 보호) 정보검색 및 처리설비에는 이용자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의 공중통신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용자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등의 정보처리기능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통신규약) 정보검색 및 처리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검색 및 처리설비 또는 단말장치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 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은 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한다.

제 3 장 이용자통신설비

제 1 절 구내통신선로설비

제35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갖추어야 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설치기준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설치대상건축물) 건축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측사·차고·창고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설비의 구성등) ① 구내통신선로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설치되되, 사업자통신설비와의 접속 및 구내회선의 구성이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공중회선등 옥외회선을 구내로 인입하는 설비
2.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능 및 접지시설
3. 사업자통신설비와 구내선을 분리 시험하기 위한 절분기능기기
4. 국선등 공중회선을 접속·수용하기 위한 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5. 공중회선 또는 구내회선의 구성·연장·분기 또는 종단을 위한 단자함·연결함·관로·배관·선조 등의 선로시설

② 제 1항 제 1호의 설비는 지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미만의 공중회선이 인입되거나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④ 체신부장관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표준설계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분계점) 사업자통신설비와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측의 최초단자로 한다.

제39조 (회선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는 구내로 인입되는 공중회선의 수용, 구내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선수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위세대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당 국선용 1회선과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위하여 필요한 회선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일 것.

2.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위장소 (1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 단위면적 (1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별표 4의 업종별 산출기준에 의해 산출한 회선수에 이의 0.5배 이상의 예비회선수를 합한 수로 하되, 단위장소가 교육, 훈련, 공연, 상영, 물품의 생산보관, 의식·집회 또는 요식업등을 행하는 곳 등 예상되는 통신수요가 적은 곳의 경우에는 필요한 국선용 회선수와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위하여 필요한 회선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일 것.

제40조 (전기적 조건)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회선당 평가잡음전압은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밀리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회선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회선당 전송손실은 주파수 800헤르츠 또는 1천헤르츠로 측정하여 1.5데시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2.0데시벨 이하이어야 한다.

④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누화감쇠량은 주파수 800헤르츠 또는 1천헤르츠로 측정하여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 (준용규정) 제23조 및 제2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구내통신선로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단말장치

제42조 (발신기능) ① 단말장치 (사업자 통신설비인 단말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선택번호등을 발생 또는 송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수신전용 단말장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통신상대방과 직접 연결되는 단말장치는 직접 통신상대방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수신전용 단말장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자동재발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의 자동재발신 회수는 3회이내이어야 하며, 발신으로 인한 회선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후 재발신까지의 시간은 매회 30초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화재·도난등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재발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수신기능) 단말장치는 통신상대방으로부터 호출신호가 있는 때에 이에 자동적으로 응답하거나 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제44조 (통신종료의 기능) 단말장치는 통신이 종료된 경우 이에 연결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통신종료를 알리고 즉시 발신 또는 수신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제45조 (명음의 발생금지) 단말장치는 이와 연결되는 사업자통신설비와의 사이에서 명음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아니된다.

제46조 (누화통신의 식별금지) 단말장치는 이와 연결되는 사업자통신설비로부터 새어나오는 다른 통신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니된다.

제3절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

제47조 (분리시험기능)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는 고장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국선과 분리하여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제48조 (국선수) ① 구내교환설비는 공중통신역무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통신량에 따라 적절한 수의 국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구내교환설비중 구내전화교환기에 수용되는 국선수는 국선의 발착기초 호량에 따라 별표 5에 의한 회선수이상이어야 하며, 국선의 발착기초호량이 180어랑 이상인 경우에는 호손율을 1퍼센트로 하는 어랑손실식에 의하여 산출한 회선수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내전화교환기를 최

초로 설치하거나 통화량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의 국선산출은 구내선 10회선당 국선 1회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요금등 산정기능) 구내자동교환 및 전송설비로서 체신부장관이 구내통신회선별로 공중통신요금을 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및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자가통신설비

제51조 (강전류전선전송설비의 기능)

강전류전선을 전송매체로 이용하는 전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강전류전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강전류전선측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제52조 (준용규정) 제18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자가통신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53조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등의 사용) 체신부장관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사용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특정설비의 설치등)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전기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시되는 기술기준과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세부규격등의 권장) 체신부장관은 이 규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의 설계·제조·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등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 사용을 권장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체신부장관으로부터 공중통신에 지장이 있음을 통보받은 전기통신설비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유선방송수신시설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과”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장 및 제 2장 제 3절과”로 한다.
-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축성있게 정하고, 그러한 기술기준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을 신속히 수용하여 질 높은 전기통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7편 241개조로 되어 있는 현행의 기술기준을 5장 55개조로 축소·조정하여 기술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성있게 운영 되도록 함.
- 나.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도록 함 (제 6 조 제 1항).
- 다. 전기통신설비는 과전압 또는 과전류

를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사람이나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함 (제 7 조).

라. 공중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에 있어서는 정전 기타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체·운용될 수 있도록 그 중요기기 및 기능이 이중화되도록 함 (제 12 조).

마.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전송 및 선로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및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제 26 조).

(별표생략)

◎ 환경청고시 제 86-4 호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및 신청 절차

1986. 3. 24

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6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및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 환경기술 감리대상시설

가. 공 통

- 1. 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내의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단, 소음은 “다”항에 의한다.
- 2. 법 제 15 조 제 2 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방지지설 설치면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시설
- 3. 법 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지설을 설계 시공하고자 할 때의 대상시설 단, 소음은 “다”항에 의한다.
- 4. 법 제 1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공동 방지지설
- 5. 환경오염 방지기금을 융자받아 방지지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대상 시설
- 6. 1년 이내에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장의 대상시설 단, 대기 및 수질은 환경보전법시행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4종이상 사업장에 한

하며, 소음은 “다”항에 의한다.

나. 대 기

- 1. 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4종이상 사업장의 대상시설
- 2. 고체연료 또는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4종이상 대상시설
- 3.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등을 연소시키는 대상시설
- 4. 레미콘 제조시설
- 5. 연탄 제조시설
- 6.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상시설
-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단위 열공급시설용량이 시간당 1,260만 Kcal (또는 수증기 발생량이 시간당 20톤) 미만의 액체연료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를 사용하는 대상시설
 - 나. 열공급시설이 아닌 배출시설로서 액체연료를 연소시켜 배출되는 배출가스량의 증가량이 5,000m³/시 미만의 대상시설을 변경할 때
 - 다. 유기고분자 화합물의 단량체를 가열하여 압출 또는 성형하는 대상 시설
 - 라. 화학제품 제조시설중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혼합, 혼합 등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시설
 - 마. 가, 나, 다를 제외한 대상시설로서 오염물질 또는 배출가스량이 당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시보다 1할미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증설 또는 개선비용이 1,000만원 미만 (특정유해물질 대상시설은 500만원 미만) 소요되는 경우 (세금 및 공과잡비 등의 비용은 개선비용에서 제외)
 - 바. 법 제 27 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체연료사용 승인을 받은 대상시설
- 다. 소음진동
 - 1. 규칙 별표 2의 “나”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동력합계 500마력이상 또는 동종시설 100대이상 공장의 배출시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내의 대상시설
 -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

정에 의한 준공업지역중 공업단지 내의 대상시설

ㄷ. 동력합계 및 동종시설의 수가 총 배출시설규모의 1할미만을 변경할 때

ㄹ. 공업용 재봉기

라. 폐수

1. 1일평균 폐수배출량이 50m³이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일평균 폐수배출량이 10m³이상) 사업장의 대상시설

단, 대상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평균 배출폐수의 증가량이 50m³미만 (특정유해물질 대상시설은 1일 10m³미만)으로서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0만원미만 (특정유해물질 대상시설은 1,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기술감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탈수기 및 그 설치비, 세금 및 공과잡비등의 비용은 제외)

2. 동일 사업장내에서 오물청소법 제 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분뇨 또는 생활하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의 폐수 배출시설

2. 환경기술감리 신청 구비서류

환경기술 감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기술감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비서류 3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기술감리신청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위한 기술감리신청.

- 1) 사업개요
-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3) 공정도
-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5)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도면
-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 8) 방지시설 등록업 관계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

나. 법 제15조제 2 항 단서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의무면제 신청

- 1)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류중 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류

- 2)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다. 법 제1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고자 할 때의 기술감리 신청

- 1) 방지시설의 설계도
- 2) 방지시설 설계치의 산출근거 및 처리효율
- 3) 기술능력 보유현황
- 4) 시설장비 보유현황
- 5)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중 위 1)~4)를 제외한 관계서류

라.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기술감리신청

-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위치도 (축척 5만분의 1지형도)
-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

역서

-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 설치도면 및 내역서
-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6)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중 위 1)~5)를 제외한 관계서류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새로운 기술감리 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하여 새로이 기술감리 대상시설로 지정된 대상시설중 이 고시 시행전에 접수된 배출시설 설치허가 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외된 기술감리 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하여 기술감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대상시설중 이 고시 시행전에 접수되어 기술감리중인 기술감리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환경청 제공)

[별지 제 1 호서식]

기호: _____		기		관		명		19		
수신: 환경청장		()		발신: _____		_____		_____		_____	
참조: 환경기술감리담당장		_____		기술감리신청서		_____		_____		_____	
허가신청서 접수일		19		년		월		일		_____	
감리대상업소현황	업소명		_____								
	소재지	사업장	_____								
		본사	_____								
	지역구분	대기: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상업 <input type="checkbox"/> 녹지 <input type="checkbox"/> 준공업 <input type="checkbox"/> 공업(공단명: _____)									
	수질: <input type="checkbox"/> 청정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나, <input type="checkbox"/> 다, <input type="checkbox"/> 특례										
자본금	내자	원	종업원수	생산직	명	대지면적	m ²				
	외자	\$		사무직	명	건물면적	m ²				
감리대상시설	배출시설명	용량	방지시설명	용량	신규또는변경	비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감리신청사유	_____										
첨부:	_____										

5303-1 일
83. 7. 11. 승인

268mm × 380mm
(신문용지 54g/m²)